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271
----------	-----

제출년월일 : 2007. 11. 8.

제출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 이유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행정력 소비 등 직간접적 비용에 비해 수수료 수입 액수가 적어, 행정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타 시·도 비교표 : 붙임

다. 2005~2006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현황 : 붙임

라.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마. 합 의 : 재정지원과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중학교 입학 배정수수료는 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 시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⑥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편입학 등)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2005 ~ 2006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현황

1. 2005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현황

학년	전·편입학 학생수	배정수수료	비 고
1	279	83,700	건당 300원
2	68	20,400	
3	6	1,800	
계	353	105,900	

2. 2006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현황

학년	전·편입학 학생수	배정수수료	비 고
1	314	94,200	건당 300원
2	84	25,200	
3	22	6,600	
계	420	126,000	

타 시 · 도 배정수수료 비교표

순	지역	수수료		조 례 명	근 거
		중	고		
1	서울	없음	1,000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각종징수조례	개정2006.2.28 조례 제4360호
2	부산	300	300	부산광역시중학교및고등학교입학또는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1977.6.3 조례 제1141호
3	대구	없음	300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2005.7.22 조례 제3714호
4	광주	없음	300	광주광역시고등학교전편·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6.4.1 조례 제3406호
5	인천	500	500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0.1.15 조례 제3402호
6	울산	500	500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0.6.17 조례 제406호
7	경기	300	300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1.5.7 조례 제3110호
8	경북	없음	없음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	개정2006.11.6 조례 제2942호
9	경남	없음	300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5.6.13 조례 제3111호
10	전북	없음	1,000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	개정 1999.1.16 조례 제2622호
11	전남	없음	없음	전라남도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2.12.30 조례 제2882호
12	충북	없음	30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2971호
13	충남	300	없음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개정 1997.1.10 조례 제2620호
14	강원	없음	없음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2003.3.19 폐지
15	제주	없음	300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2006.10.18 폐지
	대전	300	300	대전광역시중학교입학또는전·편입학과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1989.1.28 조례 제1853호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11. 26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11. 8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11. 8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6)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국장 강진수)

1. 제안이유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행정력 소비 등 직간접적 비용에 비해 수수료 수입 액수가 적어, 행정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폐지 조례안은 중학생의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행정력 소비 등 직간접 비용에 비해 수수료 수입액수가 적어 행정 간소화 및 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